

2022. 7. 11. 보도 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7월 변론 안내(7. 12.)

- 헌법재판소는 오는 7. 12.(화)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비고
1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 유상범 외 1 (법무법인 소백 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외 1 (법무법인 상록 외 1)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 도 자 료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권한쟁의 사건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공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2일 대심판정에서 2022. 4. 29. 접수된 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27. 00:03 개최된 제395회 국회(임사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가결선포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등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의 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2022. 7. 11.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 당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위원들이다.
- 김용민 의원은 2020. 12. 29. ‘공소청법안’(의안번호 2106976)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2106977)을, 민형배 의원은 2021. 2.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3)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2)을, 이수진 의원은 같은 해 5. 2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0)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24)을, 황운하 의원은 같은 해 8. 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2)을, 박홍근 의원은 2022. 4. 1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84)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286)을 각 대표발의 또는 발의하였다(이하 각 법령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원안들’, ‘형사소법 개정법률안 원안들’이라 하고, 모두 합하여 ‘개정법률안 원안들’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안 원안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한다) 소속 의원들에 의하여 발의된 것으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수사권한을 제외하여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위 개정법률안 원안들은 2022. 4. 18. 20:42 개최된 제395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사제1소위’라 한다)에서 처음 병합·심사되었다. 다음 날인 2022. 4. 19. 00:15 제3차 법사제1소위가 개최되어 법안 심사가 계속되었고, 2022. 4. 20. 제4차 법사제1소위가 개최되었으나, 김진표 위원 등 9인이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구성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정회되었다. 같은 날 무소속 법사위 양향자 위원은 위 개정법률안 원안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민주당 소속 법사위 민형배 위원은 민주당을 탈당하였다.
- 2022. 4. 22.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여 국회의장과 함께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과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등 총 8개의 항목에 관한 합의안(이하 ‘여야 합의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 2022. 4. 25. 김진표 의원 등 9인은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철회하였고, 같은 날 제5차 법사제1소위가 개최되어 위 합의안을 반영한 법사위의 조정의견을 심사하였다.
- 다음 날인 2022. 4. 26. 14:01 개최된 제6차 법사제1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위 법사위 조정의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제시하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안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항의하며 표결 직전 모두 퇴장하였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되어 개정법률안 원안들을 폐기하고 민주당안을 기반으로 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각 법률명에 따라 ‘이 사건 검찰청법 법률안’, ‘이 사건 형사소송법 법률안’이라 하고,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안들’이라 한다). 같은 날인 2022. 4. 26. 21:20 개최된 제3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 법률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되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 등 6인은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고,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 김진표 의원,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 전주혜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각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같은 날인 2022. 4. 26. 23:37 제1차 법사위 조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조정안을 의결한 뒤 23:54 산회되었다.
- 조정위원회 산회 직후인 2022. 4. 27. 00:03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법사위 위원회안을 의결한 뒤 00:11 산회되었고, 법사위 위원장은 이 사건 법률안들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인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법률안들의 본회의 부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2022헌사366).
- 같은 날인 2022. 4. 27. 17:05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었고, 이 사건 검찰청법 법률안(의안번호 2115408)이 상정되어 국회법 제106조의2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었으며, 위 본회의 도중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각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 청구인들은 2022. 4. 29. 법사위 위원장의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가결선 포행위 등으로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라2).

- 한편,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인 2022. 4. 30. 이 사건 검찰청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선포되었고, 2022. 5. 2.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이 사건 형사소송법 법률안(의안번호 2115407)에 대한 수정안도 2022. 5. 3.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선포되어 같은 날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 사건 검찰청법 수정안(법률 제18861호)과 형사소송법 수정안(법률 제18862호)은 2022. 5. 9. 모두 공포되었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27. 00:03 개최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가결·선포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심사 법률안으로 상정하여 가결을 선포한 행위,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2. 4. 30.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선포한 행위 및 2022. 5.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및 그 무효 여부이다.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검사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변경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전에 법사위에서 제대로 법안 심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정 논의 없이 개최 14분 만에 의결을 강행하여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위원을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국회법을 사문화시켰다.
- 제6차 법사제1소위에서 이 사건 법률안들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제3차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다음, 제3차 법사위 전체회의가 정회된

이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 청구인 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이수진, 송기현 의원이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률안을 협의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위 협의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후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위 협의안이 법사위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구성, 조정안 의결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심사·의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이는 안전조정위원회 절차 자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안전조정위원회의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상정 행위 및 본회의 가결·선포 행위는 위헌·무효이다.

□ 피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민형배 의원을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하여는 헌법, 국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각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되어 적법하게 가결·선포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심의·표결권 침해가 없다.
- 민형배 의원은 조정위원 선임 당시 비교섭단체 법사위 위원이었으므로, 국회법상 조정위원 선임에 제한이 없었고, 조정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으며, 배제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꾸는 것 등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유로운 지위(자유위임관계)에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이므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국회법에 위배되거나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가결·선포된 이 사건 법률안들은 법사제1소위에서 5차례 이상 논의된 내용으로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에 참여하여 청구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은 장내소란으로 조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토론 등의 절차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생략한 채 표결절차에 들어간 것이며, 표결 결과 재적 법사위 위원 18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11인의 찬성으로 이 사건 법률안들이 적법하게 가결되었다.

- 또한, 이 사건 법률안들과 그 수정안은 제395회 국회 임시회, 제396회 국회 임시회, 제397회 국회 임시회 각 본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가결·선포되었다. 청구인들은 회의 참석, 토론기회 부여, 표결 참여 등을 제한받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

□ 주요 쟁점

- 조정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조정심사가 있었는지 여부
-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 국회 본회의에서의 의사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

□ 청구인 및 피청구인

- 청구인: 1. 국회의원 유상범
2. 국회의원 전주혜
[대리인 법무법인 소백(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변호사 김연호]
- 피청구인: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 국회의장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장주영), 변호사 노희범]